

계열사 내부거래 가이드 라인

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에 대하여 사익편취 행위(사업기회 유용 또는 일감몰아주기)를 규제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및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이에 내부거래 발생시 사전 검토되어야 하는 업무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반드시 참고하시어 추후 내부거래에 대한 정당성 검토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
□ 업무 수행 기준

○ 내부거래 규제 목적

-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 20% 이상 및 그 회사가 50% 초과보유한 자회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

○ 규제대상 계열사

- 글로벌비스, 이노션, 오토에버,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, 현대머티리얼, 현대엔지니어링(자산관리)

○ 규제대상 거래

- 규제대상 계열사와의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(신규/계약연장/갱신)

○ 위법성 판단

- 상당히 유리한 조건 (정상가와의 차이 7% 이상, 거래총액 50억 이상 등 / 상품용역거래 : 100억 이상)
- 부당한 사업기회의 제공 또는 합리적 고려 또는 비교가 없는 거래 (매출액의 12% 또는 200억 이상)
- 물량 몰아주기, 자금/안력/자산 등의 부당지원, 통행세 개념의 타회사 매개한 거래 등

□ 업무 프로세스 및 자료관리

○ 내부거래 발생시, 사전 업체선정 타당성 검토 진행 (사전 검토요청 : 재경팀)

- 검토항목 : 수의계약 사유 입증자료 구비 통한 거래정당성 확보 (효율성/긴급성/보안성 등)

○ 정당성 검토 구비서류 (품의서 전자결재 시 필히 첨부 요망) ※ 관련 문건 첨부

- 규제대상 계열사 거래정당성 검토서 (사내양식)
- 업체선정품의서, 계약서(발주서), 수의계약체크리스트